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참 가 요 강



전라남도체육회

<http://www.jnsports.or.kr/>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1. 일반사항

- 대회명칭 : 제57회 전라남도체육대회
- 대회기간 : 2018. 4. 19.(목) ~ 4. 22.(일) 4일간
- 개최지 : 영암군
- 주최 : 전라남도체육회
- 주관 : 영암군, 영암군체육회, 회원종목단체
- 후원 : 전라남도, 전라남도교육청

2. 경기종목 및 종별

- 경기종목 : 22종목(정식 21, 시범 1)
 - 정식종목 : 육상,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궁도, 사격, 복싱, 유도, 배드민턴, 태권도, 볼링, 수영, 자전거, 검도, 골프, 역도, 바둑, 농구
 - 시범종목 : 당구
- 고·대·일반부 통합 종별 : 20종목
 - 육상,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사격, 배드민턴, 태권도, 복싱, 유도, 볼링, 수영, 자전거, 검도, 골프, 바둑, 역도, 농구, 당구
- 일반부 종별 : 2종목(축구, 궁도)

3. 시상

- 종합 시상
 - 1위~7위 : 우승기 및 상배, 상장 (전라남도체육회장·전라남도지사)
- 경기종목별 시상
 - 종목별 최우수선수상 : 상장
 - 1위~3위 : 상장 및 메달 (개인·단체)

○ 기타시상

- 입장상(1위~3위) : 상배,상장 (전라남도체육회장·전라남도지사)
- 성취상(1위~3위) : 상배,상장 (〃 〃)
- 장려상(3) : 상배·상장 (〃 〃)
- 모범선수단상(1) : 상배,상장 (〃 〃)
- 최우수선수상(1) : 상배,상장 (〃 〃)
- 모범경기단체상(1) : 상배,상장 (〃 〃)

4. 참 가 요 령

○ 경기방법

가. 시·군대항전으로 한다.

나. 기록경기를 제외한 모든 경기는 다음과 같이 한다.

- 토너먼트경기로 한다.
- 개최지가 군 단위일 경우에는 단체 및 개인대진 경기종목에 시드를 배정한다.
- 승부는 경기종목별 참가요강에 의하되 별도로 정하지 않는 한 해당 경기종목별 경기규칙에 의거하여 결정한다. 다만, 경기운영상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회본부의 심의에 따라 승부를 결정한다.

○ 심판 및 경기규칙

가. 심판은 해당종목별 종목단체의 공인심판원이 담당하며,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된 축구심판은 선수로 경기에 참가할 수 없고, 그 외 종목은 전남체전 심판(운영)임원에서 제외된 임원은 참가할 수 있으나, 경기종목별 운영방침에 의한다.

나. 경기규칙은 해당종목별 종목단체의 경기규칙에 의한다.

다. 경기운영은 전남체육대회 경기운영 내규에 의한다.

○ 채점방법

- 전남체전 채점내규에 의거 채점한다.

○ 참가자격

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자 중 해당 시·군에 등록기준지를 가진 자 또는 거주한 자로서 아마츄어 선수(고·대·일반 남·여 선수)로 본회에 2018년도 전남체전 선수등록을 필한 자, 단 선수등록(경기종목별 2부)은 3월 21일까지 전남체육회 사무처(전문체육팀)에 등록을 마쳐야 하며, 등록시 각 경기종목별 팀 감독 또는 주무 중 1명은 반드시 행정책임자(공무원)로 한다.

- 선수등록시 등록부 내용 미 기재, 사진 미 부착, 복사 사진이 부착된 선수에 대해서는 참가자격을 인정하지 않으므로 반드시 정규사진을 부착하여 선수등록을 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등록기준지 출전을 우선으로 하되 현거주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단, 현 거주지로 출전할 경우 도내에서 도내로 전입자는 1년이상(2017. 4. 1이전), 타사·도에서 도내로 전입한 자는 2년이상(2016. 4. 1이전) 거주하여야 한다.
- 등록기준지란 2013. 4. 1 이전의 등록기준지를 말하며 변경한 경우 참가할 수 없다.

나. 단체종목의 경우 해당 시·군 직장팀(중앙종목단체 등록팀)이 시·군 대표팀으로 출전할 경우에는 거주지나 등록기준지에 관계없이 직장 소속팀으로 출전할 수 있으며, 직장팀이란 단일 직장을 말한다. 사업소, 영업소, 지점 등의 성격을 띤 직장 근무자는 본점(사)과 합류할 수 없다.

단, 축구종목에 참가하는 일반부 선수중 전남체육회 및 중앙종목단체에 선수등록이 되어있는 자는 참가할 수 없다.

다.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된 직장팀(실업팀) 및 대학부팀은 출전할 수 있으며, 시·군에서 직장팀 및 대학팀을 조직하였으나 도대표팀으로 전국규모 대회에 1회 이상 출전한 실적이 없는 팀(선수)은 참가할 수 없다.

또한 시·군직장팀 등록 선수중 정상적인 급여를 받지 않는 선수 및 4대 보험(직장)을 적용받지 않는 선수는 일반선수 참가자격을 적용한다.

라. 교사(교직원 포함) 및 행정기관 직원을 비롯한 일반회사원의 경우 재직하고 있는 해당 소속 시·군으로 우선 출전한다.

- (1) 일반회사원의 자격으로 참가할 경우에는 동일회사에 2년이상 (2016. 4. 1 이전) 재직하여야 하며, 출전선수는 반드시 각자의 건강보험증을 지참하고 출전하여야 한다.

※ 단, 열람기간중 이의제기가 있는 선수는 아래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

- 2016년 : 소득금액증명서(세무서 발행)
- 2017년 :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업체발행)

- (2) 기간제 교사(스포츠강사 포함)는 재직학교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 내 학교에서 1년이상 재직하여야만 참가할 수 있다.

(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 (3) 일용직(기간제) 공무원은 재직 관청 소재지와 동일한 지역내 관청에서 1년이상 재직시 참가할 수 있다.(참가신청 마감일 기준)

마. 전남체육회가 각 시·군에 배정 취업한 선수 및 체육지도자는 취업된 해당 소속 시·군으로 우선 출전하며, 도교육청 및 전남장애인체육회 소속 체육지도자도 동일한 자격으로 참가할 수 있다.

단, 전남도교육청, 전남장애인체육회에서 관리하는 지도자에 한하며, 시·군 및 학교 자체에서 임용한 선수 및 코치에 대해서는 그 자격을 인정하지 않고 일반선수의 자격을 적용한다.

바. 대학선수 참가자격

- (1) 본도 출신자로서 본도 소재 대학에 재학중인 선수는 등록기준지로 출전하되 개인자격으로 출전함을 원칙으로 하며, 등록기준지로 참가신청이 안된 잔여선수는 소속학교 해당 시·군 및 거주지로도 참가할 수 있다.

- 참가자격 우선 순 : ① 등록기준지 ② 재학학교 학과 소재지 시·군 ③ 거주지(일반선수 참가자격에 준함)

- (2) 대학생이라도 단일 소속 학교의 단체종목 팀을 구성하여 출전 할 수 없다.

(2) 타시·도 활동과 관계없이 등록기준지 참가(임원에 한 함)

- 해당종목(6) : 축구, 수영, 테니스, 정구, 배드민턴, 배구

(3) 참가자격 미 부여

- 해당종목(8) : 탁구, 씨름, 궁도, 검도, 골프, 바둑, 농구, 당구
단, 임원이란 감독·코치·주무·트레이너를 말한다.

차. 본도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선수는 축구, 궁도를 제외한 나머지 종목에 대해 다음의 우선 순에 의해 참가한다.

(1) 초중학교를 현재 고등학교에 재학하고 있는 사군에서 졸업했을 경우 단, 초등학교 6학년 재학시 전학자는 등록기준지 출전을 우선으로 한다.

(2) 등록기준지 참가

(3) (1), (2)항으로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이 안됐을 경우는 재학 소속 학교 해당 시·군으로 참가

카. 참가선수의 연령은 다음과 같다.

(1) 일반 남·여 선수는 20세이상(1999. 12. 31 이전)의 자로 한다.

(2) 20세 미만일 경우에도 고등학교 졸업자는 졸업증명서 첨부시 출전 할 수 있다.

타. 기타 참가자격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이 처리한다.

(1) 부당 참가신청

- 참가자격 규정에 의거 우선권을 가진 시·군이 특정 선수의 타시·군 출전을 의도적으로 막기 위하여 참가신청을 한 후 실제경기에 참가하지 아니할 경우 당해 세부종목에 대해 차기대회(1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한다.

(2) 경기장질서 위배단체(시·군) 처벌 강화

- 선수 참가자격(부정선수 포함) 시비로 인하여 경기장질서를 문란시킨 시·군에 대해서는 해당종목의 차기대회(1년간) 출전자격을 박탈함과
동시 무자격으로 판명된 선수는 차기대회 3년이상 출전을 금지시킨다.

- 원만한 경기운영을 기하지 못하여 물의를 야기시킨 해당 종목단체에
대해서는 차기대회(1년간) 종목에서 제외한다.

- 이외의 경기장질서를 문란시켰을 경우는 전남체전 경기장질서확립 계획에 의거 징계처리 한다.

(3) 참가신청 마감이후 자격이 변동된 선수는 참가신청 마감 당시의 참가자격을 부여한다.

(4) 프로출신 선수의 참가자격은 해당 종목별 경기규정에 의한다.

파. 이상 참가자격 중 규정에 없는 사항은 해당 종목별 경기규정에 의하며
이외 사항은 본 대회 선수 참가자격 심의위원회에서 심의 결정한다.

5. 행 정 사 항

○ 경기 참가시 선수는 반드시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을 지참하여야 하며, 지참하지 않을 시는 선수로 간주하지 않는다.

- 단, 군인 선수중 일반선수는 군복무확인서로 자격을 인정하고 장기복무 군인선수(하사관, 장교)는 주민등록증 또는 신분증을 지참하여야 함

○ 원활한 경기진행을 위하여 경기시작 1시간전 각 시·군 경기종목별 책임자(행정공무원)는 출전선수들의 신분증과 건강보험증을 일괄 수합, 종목단체 본부석에 제출하여 참가자격에 대한 확인을 받아야 한다.

- 일반선수는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지 않아도 무방하나 일반직장인 자격으로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건강보험증을 지참하여야 함

○ 종목단체는 선수등록부를 항상 경기장에 비치하여야 한다.

6.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

○ 마 감 일 시 : 2018. 3. 21.(수) 15:00까지

○ 장 소 : 전라남도체육회

○ 참 가 신 청 : 경기종목별 참가요령에 의함

○ 제 출 내 용 ▮ 참가신청서 2부(원본 2부와 함께 메일로 제출)

▮ 선수등록부 2부

※ 이메일 - chjphj@hanmail.net

○ 신청 방법 : 시·군별 책임자가 직접 본회에 제출한다.

○ 구 비 서 류

- 참가신청서 2부 (본회 소정양식)
- 등록기준지 참가시 : 기본증명서(상세) 2부
- 거주지 참가시 : 주민등록초본 2통(최근 2년간 전입 이동사항 기재)
- 교사(교직원 포함), 행정기관 직원의 경우 재직증명서 2부,
일반 회사원의 경우는 재직증명서 및 건강보험증 사본 2부
- 시·군취업우수선수의 경우는 해당 시·군에서 발급하는 재직증명서 2부
- 시·군직장팀의 경우는 소속장 발행의 재직증명서 2부(연명부로 작성)
- 군인(의무경찰) 선수의 경우는 부대장이 발급하는 군복무확인서 2부
- 고등학교 선수
 - 재학소재지 시·군 출전의 경우 : 재학증명서 2부
 - 등록기준지 출전의 경우 : 기본증명서(상세) 2부

7. 시·군대표자회의

○ 일 시 : 2018. 3. 27(화) 10:30

○ 장 소 : 미정(추후 통보)

○ 참 석 대 상

- 시·군체육회 (상임부회장, 사무국장)
- 시·군 체육담당 공무원
- 해당 종목단체 실무임원 (본회 회원종목단체)

○ 토 의 안 건

- 대회운영 전반에 관한 사항
- 대 진 추 첨(13) :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태권도,
복싱, 배드민턴, 검도, 바둑, 농구
- 기 타 사 항

8. 사 전 열 랐

○ 열 랐 기 간 : 2018. 3. 26.(월) ~ 3. 30.(금) 5일간

○ 장 소 : 전라남도체육회

○ 조 치

- 시·군대표자회의 후 시·군별 책임자가 신청서를 열람하여 이상이 있을 때는 즉시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며, 본회에서는 이를 조사처리 하되 열람기간이 지난후 제출되는 이의신청서 또는 소청서(참가자격에 대한)는 일체 처리하지 않는다. 대회기간 중에는 현장 부정 외의 참가자격에 대한 소청은 일체 받지 않는다.

(열람기간 중 무자격 선수가 발견되었을 시는 교체할 수 없다.)

- 열람기간 이후에 발견된 무자격 선수는 대회종료 후 자격을 재 심의 하여 제재 조치한다.(차기대회 출전 제한 등)

○ 열람확인서 제출

- 2018. 3. 30(금) 18:00까지, 시·군별 책임자 직접 제출

9. 참 고 사 항

구분	선수등록 및 참가신청	대표자 회의(대진추첨)	열람기간
일시	3. 2.(금)~3. 21.(수) 15:00 전라남도체육회	3. 27.(화) 10:30 장소(미정)	3. 26.(월)~3. 30.(금) 전라남도체육회

10. 경기종목별 참가요령

1. 육 상

□ 종별 및 경기종목

- 종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자부/여자부)
- 종목

구 분	종별	세 부 종 목	비 고
트랙	남자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400mR	
	여자	100m, 200m, 400m, 800m, 1500m, 5000m, 400mR	
필드	남·여	포환던지기, 멀리뛰기	
마라톤	남·여	10km 단축마라톤	

□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외 선수 1인 2종목, 1종목 2인 이내(계주경기는 제외)
- 마라톤종목 참가는 시·군별 남·여 각 5명이내(단, 채점은 상위 4명의 기록으로 함)
 - 마라톤에 참가하는 선수는 반드시 주민등록증을 지참하여야 한다.
- 시·군별 경기복(상위) 통일

□ 경기방법

- 타임레이스 경기로 한다.
- 단축마라톤 제한시간은 남자 50분, 여자 60분으로 한다.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 선수 본인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출전할 수 있다.

2. 축 구

- ☐ 종 별 : 일 반 부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20인 이내(선수교체 불가)
- ☐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단체전(무승부시 예선~결승 승부차기)
- ☐ 경기시간 : 30분 + 30분 (중간휴식 10분)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중앙종목단체에 등록된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은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선수등록된 경우에도 참가할 수 없다.
 - 고등학교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프로선수는 당해년도 대한축구협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선수는 참가할 수 있다. 단, 임의탈퇴 및 자유계약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3. 테 니 스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7인 이내(후보 1인 포함)
- ☐ 경기방법 : 토너먼트(4단 1복식 경기)
- ☐ 경기진행 : ① 단식 ② 단식 ③ 복식 ④ 단식 ⑤ 단식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임원은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4. 정 구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8인 (후보 2인 포함)
- ☐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단체전 (3복식 2선승제)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임원은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5. 배 구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15인 이내
- ☐ 경기방법 : 극동식 토너먼트경기(9인제 경기)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임원은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 우리도 일반부 도대표선수를 제외한 중앙종목단체 등록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도대표선수들의 참가는 팀이 아닌 개인자격으로 참가하되 이적기간이 참가신청일 기준으로 1년미만인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선수등록 기준은 2017년부터 2018년도 전남체전 참가신청 마감일까지로 한다.

6. 탁 구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7인 이내(남6, 여1)
- ☐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단체전(남), 개인전(여) / 5게임제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 참고사항
 - 유니폼색상은 셔츠의 소매나 칼라를 제외하고는 사용하는 볼의 색상과 뚜렷이 구별되는 색상이어야 한다.

7. 씨 림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여 혼성)
- ☐ 참가인원
 -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9인(후보 남·여 각 1인 포함)
 - └ 고등학생(남)은 1명 참가 가능(자유참가) / 여자는 제한없음
- ☐ 경기방법
 - ┌ 토너먼트식 7인제 단체전 경기로서 남·여 체급구분 없음
 - └ 남·여 선수 구분경기(남자 4체급, 여자 3체급)
- ☐ 참 가 자 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8. 궁 도

□ 종 별 : 일 반 부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외 선수 7인 이내

□ 경기방법

- 단체전 기록경기로 하되 7명이 참가하여 상위자 5명의 성적합계로 순위를 정하고,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의 기록에 따라 개인 1, 2, 3위를 정한다.
- 참가선수 7명중 3명이상 의무적으로 각궁 죽시를 사용해야 하며, 각궁죽시 사용선수가 없는 시·군은 4명의 선수만 참가한다.
 - 후보 선수 3명 불인정
- 참가선수 7명중 상위성적 5명의 기록 합산시 각궁죽시 사용선수 3명의 성적을 의무적으로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하며, 각궁 죽시 사용선수가 없는 시·군은 상위 2명의 선수 기록만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자
- 전남궁도협회 및 전남체육회에 전국대회 선수등록이 된 자에 한함
- 고등학교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각궁(죽시) 사용선수는 개인전 등위결정에 우선한다.
 - 동점발생 시 우선순위 결정
- 전남궁도협회 및 전남체육회에 선수등록이 되어있지 않은 자는 참가할 수 없다.

9. 사 격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

☐ 경기종목 : 공기총(공기권총, 공기소총)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4인 이내

☐ 경기방법

○ 표적거리 10m로서 소요시간 90분

○ 단체전 기록경기로 하되 4명이 참가하여 상위자 3명의 성적합계로 순위를 정하고, 개인전은 별도로 실시하지 않으며, 단체전에 참가한 선수의 기록에 따라 개인 1, 2, 3위를 정한다.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본도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 선수 본인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출전할 수 있다.

10. 배드민턴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여 혼성)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외 선수 6인 이상 9인 이내
- ☐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개인전
 - 남·여 선수 구분 경기 (① 남·여혼복 ② 남자복식 ③ 여자복식)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임원은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 ☐ 참고사항
 - 경기복은 대한배드민턴협회 규정에 의하며, 경기복 상의 뒷면에 소속명을 표기하여야 한다.
 - 글자크기는 70^{cm²}내, 높이는 6-10^{cm}이내

11. 태 권 도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자부/여자부)

☐ 체 급 : 8 체 급

순	남 자 부		여 자 부	
	체 급	체 중	체 급	체 중
1	-54kg급	-54kg까지	-46kg급	-46kg까지
2	-58kg급	54kg 초과 ~ 58kg까지	-49kg급	46kg 초과 ~ 49kg까지
3	-63kg급	58kg 초과 ~ 63kg까지	-53kg급	49kg 초과 ~ 53kg까지
4	-68kg급	63kg 초과 ~ 68kg까지	-57kg급	53kg 초과 ~ 57kg까지
5	-74kg급	68kg 초과 ~ 74kg까지	-62kg급	57kg 초과 ~ 62kg까지
6	-80kg급	74kg 초과 ~ 80kg까지	-67kg급	62kg 초과 ~ 67kg까지
7	-87kg급	80kg 초과 ~ 87kg까지	-73kg급	67kg 초과 ~ 73kg까지
8	+87kg급	87kg 초과	+73kg급	73kg 초과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의 선수 각 체급 1명으로 하고, 남자는 최소한 5체급 이상, 여자는 8체급중 6체급 제한 선별 출전 한다.

➢ **남자 5체급 이상 출전하지 않으면 채점대상에서 제외됨**

☐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체급별 (남자부) 개인전(협회 공인호구 착용)
- 고·대·일반으로 통합운영하되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경기시간

- 남자 : 2분 3회전 (중간휴식 30초)
- 여자 : 2분 3회전 (중간휴식 1분)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협회에서 인정하는 유단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 본인 협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12. 복 상

☐ 종 별 : 고 · 대 · 일반부 통합

☐ 체 급 : 10체급

순	체 급	체 중	순	체 급	체 중
1	-49kg급	-49kg까지	6	-69kg급	64kg초과~69kg까지
2	-52kg급	49kg초과~52kg까지	7	-75kg급	69kg초과~75kg까지
3	-56kg급	52kg초과~56kg까지	8	-81kg급	75kg초과~81kg까지
4	-60kg급	56kg초과~60kg까지	9	-91kg급	81kg초과~91kg까지
5	-64kg급	60kg초과~64kg까지	10	+91kg급	91kg이상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외 선수 각 체급별 1명

☐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체급별 개인전

☐ 경기시간 : 2분 3회전 경기(중간휴식 30초)

☐ 계 체 량 : 경기시간 3시간전에 실시함

(첫날경기의 계체는 전일 16:00~17:00까지 실시)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적지 출전을 우선으로 한다.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 본인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출전할 수 있다.

13. 유 도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외 선수 5인 이상 7인 이내(후보 2인 포함)
- ☐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5인제 단체전 경기로서 체급 구분 없음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 본인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14. 볼 링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자부/여자부)
- ☐ 참가인원
 - ┌ 남자 6인이내, 여자 6인이내(남·여 각 후보 1인 포함)
 - └ 고등부(남,여) 개인전 각 1명 ★ 단체전 참가선수도 출전 가능
- ☐ 경기방법 : 남·여 구분 단체전 및 개인전 실시
 - 단 체 전 : 5인조(남,여), 3인조(남,여)
 - 개 인 전
 - ┌ 남·여 개인종합(별도 경기 없이 단체전 참가 선수의 기록으로 순위 결정)
 - └ 남·여 고등부 개인전(시범)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팀에 소속된 자는 출전할 수 없다.
단, 본도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 본인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15. 수 영

□ 경기종목 및 종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자부/여자부)

종 목	남	여	비 고
자 유 형	50m, 100m, 200m	50m, 100m, 200m	
배 영	50m, 100m	50m, 100m	
평 영	50m, 100m	50m, 100m	
접 영	50m, 100m	50m, 100m	
개인혼영	200m	200m	
계 영	200m	200m	단체전
혼 계 영	200m	200m	단체전

□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외 선수 1인 2종목 이내 1종목 2인까지 참가할 수 있으며, 후보선수는 인정하지 않는다.(계영경기는 제외)

□ 경기방법

- 타임레이스 경기로 한다.
- 고·대·일반으로 통합 운영하되 남·여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 계영 및 혼계영에 참가하는 선수는 참가신청서에 별도 “참가” 표시 없이 부별 4명이상 출전 시는 출전권 부여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적지 출전을 우선으로 한다.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대학팀의 임원·선수는 참가할 수 없고 임원은 등록기준지로 참가할 수 있다.

16. 자 전 거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자부/여자부)

□ 경기종목 ▮ 남 자 : 1800m 도로독주

▮ 여 자 : 1200m 도로독주

□ 참가인원 : 남자 2인이내, 여자 2인이내(남.여 각 후보 1인 포함)

□ 경기방법

○ 타임레이스 경기로 한다.

① 예선전, ② 8강전(1위:8위, 2위:7위, 3위:6위, 4위:5위)

③ 4강전(1위:4위, 2위:3위), ④ 결승전(1·2위 순위 결정전)

○ 고·대·일반으로 통합운영하되, 남·여로 구분 실시한다.

○ 경기출전 선수의 1차 명단은 감독자회의시 제출하며 최종명단은 경기 시작 1시간전 경기진행 본부에 제출한다.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 본인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출전할 수 있다.

○ 국민체육진흥공단 경륜운영본부 소속 선수 및 훈련생은 참가할 수 없다.

□ 참고사항

○ 경기용 자전거는 남·여 28인치 이하 마운틴바이크(MTB-산악자전거)를 사용하며 기어바이스는 자유로 선택한다.

○ 경기참가 선수는 반드시 헬멧을 착용해야 하며, 출전선수의 복장(트레이닝복, 유니폼)은 자유이나 상의 뒷판에 소속(시.군)을 부착하여야 한다.

17. 검 도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여 혼성)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10인 이내
 - 고 등 부 : 2명(후보 1인 포함)
 - 여 자 : 2명(후보 1인 포함)
 - 대학·일반 : 6명(후보 1인 포함)
- ☐ 경기방법 : 토너먼트식 단체전(7인조 대항전)
- ☐ 경기시간 : 4분(1인조 게임)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자.
 - 대한검도회 회원증 소지자에 한해 참가자격 인정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18. 골 프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여 혼성경기)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4인

☐ 경기방법 : 2라운드 운영

○ 팀 인원은 4명(남자 3명, 여자 1명)으로 구성하되, 남자선수와 여자선수는 고등학생이나 대학생은 1명까지만 참가시킬 수 있다.

○ 36홀 스트로크플레이에 의해 남·여 통합 매일(18홀기준)상위자 3명의 스코어를 2일간 합산하여 단체전 순위를 결정한다.

○ 개인전을 별도로 실시하지 않고 단체전 경기의 기록에 따라 남·여 구분 36홀 성적으로 개인 1, 2, 3위를 정한다.

○ 기록 동점시 순위결정

(1) 단체전은 최종일 성적(3명)에 우선하며, 동점일 경우 최종일 4명의 스코어로 결정한다(4명 참가팀 우선)

그래도 동점일 경우는 최종일 스코어중 최저타수를 기록한 선수가 있는팀이 우선한다. 이후는 추첨으로 결정한다.

(2) 개인전은 최종일 스코어카드상 카운트백(인코스 스코어 백 9홀, 6홀, 3홀, 1홀순)으로 순위를 결정하며, 그래도 동점일 경우 카운트백(아웃코스 스코어백 9홀, 6홀, 3홀, 1홀순)으로 순위 결정

※ 단, 종합득점은 동점시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 조 편성은 첫날은 추첨으로 하고, 최종일은 전날 성적을 기준으로 편성한다. 동일 시군은 같은 조에 편성하지 않는다.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참가자격이 없다.

☐ 기타사항

○ 그린피(카트비 포함)는 개최자가 지원하며 캐디비 등 제비용은 출전 시·군에서 부담한다.

19. 역 도

□ 경기종목 및 종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자부/여자부)

순 번	남 자 부		여 자 부	
	체 급	체 중	체 급	체 중
1	56kg급	56kg까지	48kg급	48kg까지
2	62kg급	62kg까지	53kg급	53kg까지
3	69kg급	69kg까지	58kg급	58kg까지
4	77kg급	77kg까지	63kg급	63kg까지
5	85kg급	85kg까지	69kg급	69kg까지
6	94kg급	94kg까지	75kg급	75kg까지
7	105kg급	105kg까지	+75kg급	+75kg초과
8	+105kg급	105kg초과		

□ 참가인원 : 감독, 코치, 주무외 6명(남 4명, 여 2명)

○ 남자 : 8체급중 4체급 참가(체급별 1명)

○ 여자 : 7체급중 2체급 참가(체급별 1명)

□ 경기방법 : 체급별 개인전(인상,용상,합계)

□ 계 체 량 : 경기시작 2시간전에 실시(개인별)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본적지 출전을 우선으로 한다.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본도 대표로 전국체전에 출전하겠다는 해당 시·도 소속장의 이적동의서와 본인의 협약서를 첨부하여 등록절차를 이행했을 때는 등록기준지로 출전할 수 있다.

20. 바둑

- ☐ 종 별 : 고·대·일반부 통합(남·여 혼성경기)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5인(단체전 후보 1인포함)
- ☐ 경기방법 : 단체전, 개인전

- 단체전(3명) 및 개인전(1명)으로 실시한다.
- 토너먼트로 진행한다.
- 대국규정
 - 총 호선 덤6집반
 - 제한시간 : 각 10분, 30초 초읽기 3개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필한 자
- 등록기준지 출전을 우선으로 한다.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선수는 참가자격이 없다.
- 프로기사는 참가할 수 없다

21. 농 구

- ☐ 종 별 : 일 반 부(고·대·일반부 통합)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8인 이내
- ☐ 경기방법 : 5인조 단체전 (대한농구협회 대회규정에 의함)
- ☐ 경기시간 : 8분 4쿼터제(무승부시 연장전 5분)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자.
 - 2008년 이후 대한농구협회에 등록된 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 실업팀, 직장팀, 군인팀, 학교팀의 임원은 선수로 참가할 수 없고 다만, 경기임원으로 참가할 수 있다.

22. 당 구(시범)

- ☐ 종 별 : 일 반 부(고·대·일반부 통합)
- ☐ 참가인원 : 감독, 주무, 코치 외 선수 2인 이내(1종목 1명)
- ☐ 경기종목 : 캐롬(3쿠션), 포켓볼(10볼)
- ☐ 경기방법 : 개인전 토너먼트(대한당구연맹 경기규칙에 의함)
- ☐ 참가자격
 - 2018년도 선수등록을 마친 자.
 - 본도 출신자로서 타시도에서 활동하고 있는 임원·선수는 참가할 수 없다.
- ☐ 채점방법
 - 시범종목으로 채점하지 아니한다.

제57회 전남체전 참가요강 변경사항

구분	대상	내 용		사 유
		현행	변경	
참가 자격	중·고등학생 등록선수 (축구)	▶ 참가불가	▶ 참가불가 ▶ 개인의사와 관계없이 등록된 경우에도 참가불가	등록선수 참가 명확화
	동의서	▶ 2개시·군 이상 참가자격을 가진 선수는 동의서에 의거 참가자격 부여	▶ 동의서 규정 폐지 ▶ 참가자격 우선순위에 의거 자격 부여	참가자격 명확화 및 선수보호
기 타	구비서류	▶ 기본증명서	▶ 기본증명서(상세)	관련법 개정

전남체육대회 채점내규

제 1 장 총 칙

제 1 조(목적) 본 내규는 전남체육대회 시·군별 순위결정을 위한 채점방법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 2 장 채 점

제 2 조(종합순위결정) 시·군별 종합순위는 경기부문별로 획득한 점수의 총계로 한다.

제 3 조(경기부문의 종합득점) 경기부문별 종합득점은 다음과 같이 산출한다.

【단체, 개인단체 토너먼트경기】

- 해당종목(10종목) :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바둑, 농구
- 채 점 방 법

$$\frac{\text{시·군별 득점합계}}{\text{종별 득점 총계}} \times \text{당해 시·군의 종별획득점수} \times 100 = \text{당해 시·군의 종합득점}$$

★ 설 명 : ① 시·군별 득점합계는 당해 경기부문에 참가한 시·군별 수에 따라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한 점수의 합계를 말함.

*예) 22개 시·군참가 : 1+2+3+4+5 ----- +22 = 253점

② 종별 득점총계는 경기부문의 종별(남자, 여자)에서 획득한 점수의 시·군별 총계를 말함.

③ 개인단체경기(탁구,바둑)의 개인전은 3위까지만 배점한다

*예) 1위(1명) - 3점, 2위(1명) - 2점, 3위(2명) - 1점

【개인체급, 세부종목별 토너먼트경기】

- 해당종목(3종목) : 복싱, 태권도, 배드민턴

- 채 점 방 법

○ 본 규정 제9조 토너먼트경기 배점방식에 의거 체급별, 세부종목별 참가 인원(팀)수에 따라 배점

○ 체급별, 세부종목별 배점 합계에 의해 시·군별 순위결정

○ 최하위 시·군을 1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00점씩 가산하여 종목별 점수 산출

*예) 22개 시·군참가 : 22위(100점), 21위(200점) ----- 1위(2200점)

【기 록 경 기】

- 해당종목(8종목) : 육상, 수영, 궁도, 사격, 볼링, 사이클, 골프, 역도
 - 채 점 방 법
 - 본 규정 제10조 기록경기의 배점방식에 따라 종별(남·여), 세부종목별(100m, 200m, 단체전, 개인전 등)로 각각 배점
 - 배점 합계에 의해 시·군별 순위 결정
 - 최하위 시·군을 100점으로 하고 순차적으로 100점씩 가산하여 종목별 점수 산출
- *예) 21개 시·군참가 : 21위(100점), 20위(200점) ----- 1위(2100점)

제 4 조(종합득점이 동점일 경우의 순위결정) 시·군별 종합 총득점이 동점인 시·군이 있을 때에는 1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하고, 1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2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2위 경기부문수가 같을 때에는 3위 경기부문수가 많은 시·군을 상위로 정한다. 다만, 경기부문이라 함은 21개 경기종목을 말한다.
(육상 경기부문의 순위는 트랙·필드와 단축마라톤의 시·군별 득점 합계로 정한다.)

제 5 조(순위전을 못할 경우의 배점) 부득이한 경우 순위전을 실시하지 못할 때에는 동위자 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 6 조(동위자 배점) 동위자가 2명이상일 때에는 당해 동위자수에 해당하는 차위점수를 합산하여 이를 동위자수로 등분, 배점한다.

제 7 조(기권, 몰수, 불출장 채점) 기권, 몰수 또는 불출장 할 때에는 이유 여하를 막론하고 0점으로 한다. 다만, 경기규칙에 따라 경기를 진행할 수 없는 경우의 기권과 경기몰수는 당해 단체가 결정하되 채점 여부는 해당 종목단체의 사유서를 소청심사위원회가 심의하여 결정한다.

제 8 조(경기부문별 채점) 각 경기부문별 채점은 종목단체(경기기록 책임자) 책임하에 채점하되 대회본부 기록실의 채점기록과 대조 확인한 후 대회임원장의 최종확인을 거쳐 발표한다.

제 9 조(토너먼트경기의 배점) 토너먼트경기는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시.군 등위	1 위	2 위	3 위	준준결승	예 선	
					2 회	1 회
22	22	21	(2) 19.5	(4) 16.5	(8) 10.5	(6) 3. 5
21	21	20	(2) 18.5	(4) 15.5	(8) 9.5	(5) 3
20	20	19	(2) 17.5	(4) 14.5	(8) 8.5	(4) 2. 5
19	19	18	(2) 16.5	(4) 13.5	(8) 7.5	(3) 2
18	18	17	(2) 15.5	(4) 12.5	(8) 6.5	(2) 1. 5
17	17	16	(2) 14.5	(4) 11.5	(8) 5.5	(1) 1
16	16	15	(2) 13.5	(4) 10.5		(8) 4. 5
15	15	14	(2) 12.5	(4) 9.5		(7) 4
14	14	13	(2) 11.5	(4) 8.5		(6) 3. 5
13	13	12	(2) 10.5	(4) 7.5		(5) 3
12	12	11	(2) 9.5	(4) 6.5		(4) 2. 5
11	11	10	(2) 8.5	(4) 5.5		(3) 2
10	10	9	(2) 7.5	(4) 4.5		(2) 1. 5
9	9	8	(2) 6.5	(4) 3.5		(1) 1
8	8	7	(2) 5.5			(4) 2. 5
7	7	6	(2) 4.5			(3) 2
6	6	5	(2) 3.5			(2) 1. 5
5	5	4	(2) 2.5			(1) 1
4	4	3				(2) 1. 5
3	3	2				(1) 1
2	2					(1) 1
1	1					

제 10 조(기록경기의 배점) 기록경기는 경기종목별로 다음과 같이 배점한다.

■ 육상

- ① 트랙과 필드를 합하여 1개 부문으로 하고, 단축마라톤은 별도 1개 부문으로 하며 세부종목별로 1개 시·군에서 2인 이상이 입선하였을 때에는 상위자만 배점한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7~8위	9~16위	참가시군
배 점	9 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3 점	2 점	공히 1점

- ② 단축마라톤은 남·여 각각 별도로 제한시간 내에 골인한 선수 전원에게 대하여 배점하되 최하위자를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배점한다. (제한시간내 골인한 선수가 없는 시·군은 배점대상은 되나 0점으로 한다.)

■ 수영

- 세부종목별로 다음과 같이 배점하며 1개 시·군에 2인 이상 입선하였을 때에는 상위자만 배점한다.

등 위	1 위	2 위	3 위	4 위	5 위	6 위	참가시군
배 점	9 점	8 점	7 점	6 점	5 점	4 점	공히 1점

■ 궁도·사격·골프

- ① 단체전 기록이 최하위인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배점하며 개인전은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을 배점한다.
- ② 경기부문별 종합득점은 단체전과 개인전 배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볼링

- ① 단체전(5인조전)은 최하위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배점하며 개인전 1위 3점, 2위 2점, 3위 1점을 배점한다.
- ② 경기종목별 종합득점은 부별(남·여)로 단체전과 개인전의 배점을 합산하여 순위를 결정한다.

■ 사전거

- 종별(남·여) 구분 기록순위가 최하위인 시·군을 1점으로 하여 순차적으로 1점씩 가산 배점하며 종별로 배점한 점수를 합산 순위를 결정한다.
- 남·여 22개 시·군 참가 경우
남자 1위 22점 --- 22위 1점 + 여자 1위 22점 --- 22위 1점
= 합산점수로 순위결정(1위 2,200점 ----- 22위 100점)

■ 역도

- 체급별 참가 인원수에 관계없이 1위부터 순차적으로 배점하며 체급별 배점 점수를 합산 순위를 결정한다.

등위	1위	2위	3위	4위	5위	6위	7위	8위	참가시군
배점	9점	8점	7점	6점	5점	4점	3점	2점	공히 1점

제 11 조(팀 육성 시·군 가산 채점) 전국체전 종목 육성(직장팀, 개인취업) 시·군에 대해서는 별도로 정한 가산점을 부여하여 종합득점에 반영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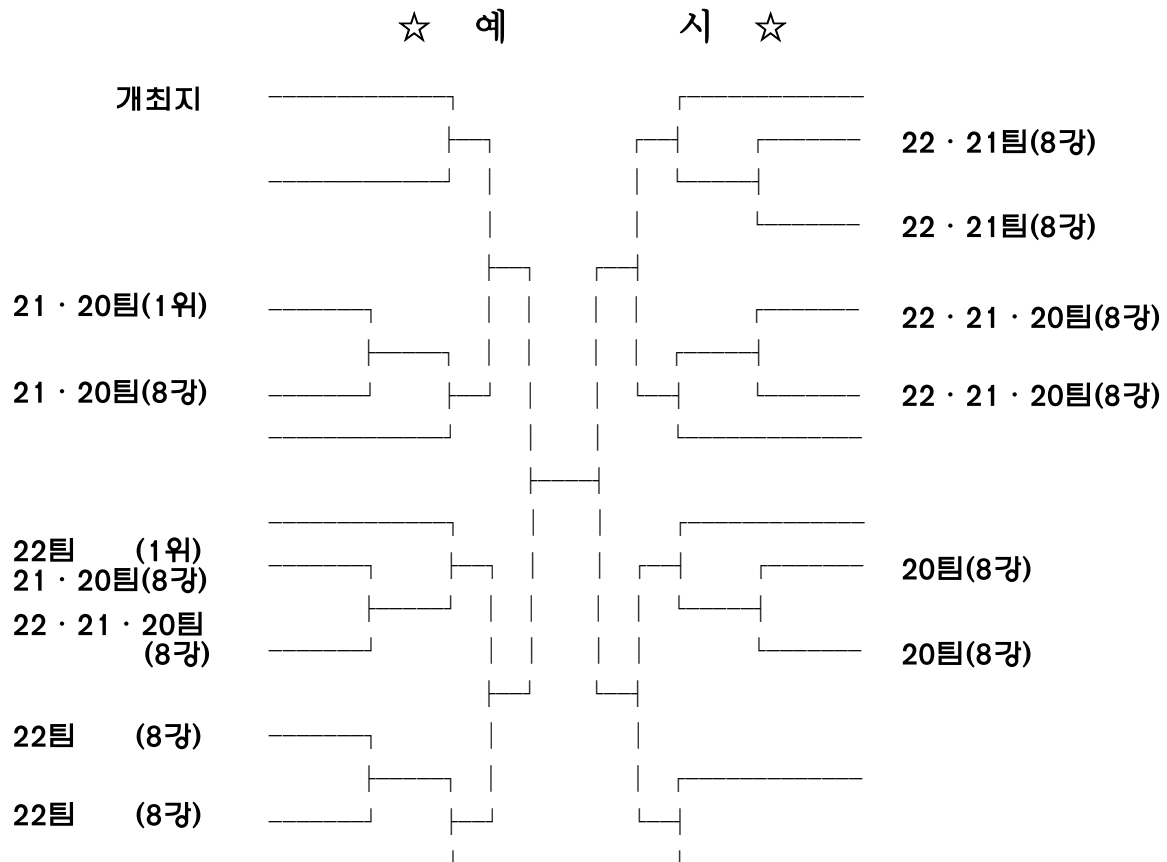
■ 가산점 기준

전국체전종목 단일팀 육성	개인취업(전국체전종목) 육성
▪ 단체대진종목의 부전승(2회전) 득점 부여(1,050점)	▪ 단체대진종목의 참가 기본득점 부여 (1인당 350점)
▪ 전국체전종목 2팀이상 단일팀 육성시는 아래와 같이 배점한다. ▶ 2팀 : 1050+525(1025점의 1/2)=1575 ▶ 3팀 : 1050+525(1025점의 1/2)+350(1025점의 1/3)= 1925점 ▶ 4팀 이상 : 1050+525(1025점의 1/2)+350(1025점의 1/3)+350(1025점의 1/3) ---- ▪ 남·여부 분리실시 종목 육성 시는 부여득점의 2분의 1만 적용	

제 12 조(개최지 가산 채점) 기록경기에서 획득한 득점의 20%와 시드배정에서 제외된 단체종목이 1회전에서 패할 경우 부전승 점수를 부여하여 종합채점에 가산 채점한다. (단, 단체전 부전승 점수는 군단위 개최시만 적용한다)

- 기록경기(8) : 육상, 수영, 사이클, 볼링, 사격, 궁도, 역도, 골프
- 단체경기(10) : 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바둑, 농구

제 13 조(단체대진종목의 추첨) 전년도 단체대진종목(축구, 테니스, 정구, 배구, 탁구, 씨름, 유도, 검도, 바둑, 농구) 8강 시·군은 별도추첨 대진토록 한다. 단, 경기종목별로 19개 시·군 이하 참가시는 8강 대진추첨을 실시하지 않는다.



제 14 조 본 내규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전국체전 채점내규를 준용한다.

제 3 장 부 칙

- 제 15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1985년 4월 23일부터 시행한다.
- 제 16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1991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 17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1997년 3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8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1998년 5월 1일부터 시행한다.
- 제 19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2002년 2월 5일부터 시행한다.
- 제 20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2006년 2월 9일부터 시행한다.
- 제 21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2012년 1월 18일부터 시행한다.
- 제 22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2015년 2월 12일부터 시행한다.
- 제 23 조(시 행 일) 본 내규는 2016년 2월 17일부터 시행한다.